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05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장철민 · 채현일 · 이성운
이재관 · 김태선 · 김한규
박 정 · 한병도 · 박용갑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산업재산 심사의 초기 단계인 분류 및 선행 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와 기업 등에 산업재산 정보를 기초로 조사·분석·평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임.

그런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재산 심사행정 지원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재산 심사행정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 심사 지원
2. 산업재산 국내·외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3. 산업재산 분류 및 분류 관련 국내·외 협력
4.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5. 그 밖에 산업재산 심사행정 및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략원 또는”을 “전략원, 진흥원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진흥원

제3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명의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5조의2(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u> <u>설립 등) ① 산업재산 심사행정</u> <u>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u> <u>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u> <u>위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하</u> <u>“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u> <u>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u> <u>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u> <u>성립한다.</u> <u>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u> <u>사업을 한다.</u> <u>1. 산업재산 심사 지원</u> <u>2. 산업재산 국내·외 선행기술</u> <u>조사 및 분석</u> <u>3. 산업재산 분류 및 분류 관련</u> <u>국내·외 협력</u> <u>4.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산업</u> <u>재산 정보의 조사·분석</u> <u>5. 그 밖에 산업재산 심사행정</u> <u>및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특</u> <u>허청장이 위탁하는 업무</u> <u>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u>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전자화기관, 진단기관, 정보원, 전략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특허청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26조(업무의 위탁) ① -----

-----전략원, 진흥원 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27조(비밀유지 의무)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진흥원</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